

중독학과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절차에 관한 매뉴얼



2025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중독학과

차 례

제 1장 총괄	1
제 2장 석사학위논문 제출 일정 및 규정	2
석사학위 절차진행도	7
제 3장 박사학위논문제출 일정 및 규정	8
석·박사 통합과정 규정	13
박사학위 절차진행도	16
박사학위논문 일정 및 규정에 관한 Q&A	17
<제규정>	
• 일반대학원 학사 시행 세칙	20
• 성심교정 장학금 지급 세칙	31
• 대학원과 타대학원 간의 학점교류 규정	37
• 대학원 학술상 규정	41
• 학·석사 연계과정 규정	43
[별첨 1] 교내연구업적평가 A급 학술지	45
[별첨 2] 전공과목일람	46

제 1장 총괄

1. 「중독학과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절차에 관한 매뉴얼」(이하 논문 매뉴얼)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중독학과의 석사 및 박사 학위 작성 그리고 논문 제출절차에 관한 중독학과 내규와 매년 초에 발행되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요람의 학사시행세칙 논문심사계획을 기초로 구성되어 있다.
2. 따라서, 본 논문 매뉴얼의 목적은 교수와 학생들이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절차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여 논문과 관련한 학과 일정을 명확히 하고 혼란을 방지하는 데 있다.
3. 본 논문 매뉴얼의 내용은 필요한 경우 대학원 주임교수의 주관 아래 교수회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4. 논문지도교수의 자격기준(학사시행세칙 제6장 1절 37조)
 -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단, 부득이한 경우 타 학과 교수 또는 외부교수에게 의뢰할 수 있으나 외부교수인 경우에는 대학원부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논문지도교수는 정년퇴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5. (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 각 과정 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체제”를 준수해야 한다.
6. 논문 제출시한
 - 1) 입학일로부터 석사학위 논문은 4년 내에, 박사학위 논문은 7년 내에, 석·박사통합과정 학위 논문은 8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장 석사학위논문 제출 일정 및 규정

구분	전기졸업 기준	후기졸업 기준	근거
1. 논문제출자격시험	3월 중순~4월 초	9월 중순~10월 초	학사시행세칙
2. 논문 프로포절 준비	3월~5월	9월~10월 말	학과내규
3. 논문 프로포절 심사	6월 초	12월 초	학과내규
4. 연구 진행 및 논문 작성	6월~10월	12월~4월	
5. 학위청구논문심사 제출 공고 및 신청	10월 중순~11월 초	4월 중순~5월 초	학사시행세칙
6. 예비 심사기간	11월 중순	5월 중순	학사시행세칙
7. 본 심사기간	12월 초	6월 초	학사시행세칙
8. 학위청구논문 인준본 제출 기간	12월 말	7월 초	학사시행세칙

1. 교과과정 이수요건

1) 석사과정에 있어서 필수과목 4과목(총 12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중독의 이해(3학점)	사회복지조사론(3학점)
자료분석론(3학점)	중독연구방법(3학점)

2) 석사과정에는 2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3) 비전공자는 보충과목 최대 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2. 지도교수 배정

1) 논문지도 교수는 석사과정 제2차 학기 이내에 학과 교수회의를 거쳐 주임교수가 결정한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학과사무실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

3. 논문제출자격시험

1) 외국어 시험

외국어시험 중 영어과목은 공인된 영어시험의 일정 수준 이상 성적 취득자 또는 본교 외국어교육원의 지정 과목 수료증 소지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① 면제기준

각 종류의 시험은, 해당시험을 친 후 2년 내의 성적으로만 한다. 또한 면제를 원할 경우, 해당 성적표의 원본을 외국어시험 신청 기간에 교학과에 직접 제출한다.

면제기준

대상	시험 구분	종류	면제자격(해당점수 이상자)				
			구분	PBT	CBT	IBT	
석사 박사 과정	교외 (공인 시험)	TOEFL	석사	535	200	73	
			박사				
			석사				
		TOEIC	석사	700			
			박사				
		TEPS	석사	600			
박사							
석사 과정	교내 (외국어 교육원)	집중영어 과목	① 외국어교육원 대학원생 프로그램 중 방학기간 집중영어(3단계 이상)를 수료하고 B등급 이상인 자 ② 외국어교육원의 1학과 2학과 모두 집중영어(3단계 이상) 프로그램을 모두 수료하고 B등급 이상인 자				

* 본 면제기준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자의 경우는 종전기준과 변경된 기준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② 응시자격

석사과정 1학기 이상 수료한 자이며,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과목

외국어 시험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 입학생의 외국어시험은 한국어로 할 수 있다.

④ 출제방법

외국어 시험은 전공분야(100%)로 출제되며,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출제, 시행한다.

⑤ 사정

외국어 시험의 결과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며, 4월 초와 10월 초에 대학원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⑥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함.

2) 종합시험

① 응시자격

석사학위 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자중 18학점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 3.0(80점)이상인 자로 한다.

② 시험과목

구분	과목명
기초과목	사회복지조사론
전공과목	중독의 이해
전공 외 과목	중독연구방법

③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불합격의 경우, 불합격한 해당과목(기초, 전공, 전공 외 중)을 다음 학기에 응시할 수 있다.

4. 논문 프로포절 준비 및 심사교수 결정

- 1) 지도교수가 정해지면, 논문 주제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지도교수와 상의한다.
- 2) 프로포절 여부가 결정되면, 교수회의에서 심사교수와 심사위원장을 결정한다. 심사교수와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 본 심사에서의 심사교수와 동일하다.

5. 프로포절 발표 및 심사

1) 심사시기

논문 프로포절은 연 2회(6월, 12월) 심사한다.

- ① 프로포절 심사는 합격, 조건부 통과, 불합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② CP(조건 부 통과) 받은 후 1개월 내에 3인의 교수의 서면 심사를 필수로 한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서면심사를 받지 못하면 자동 Fail 처리 된다.
- ③ 프로포절은 심사위원 3인 중 2인이 합격을 인정하면 합격이 된다.

1학기(2학기)	6월(12월)	12월(6월)
프로포절	○	○

- 2) 과에서 지정한 날에 학과교수 및 대학원생 참석 하에 발표하며, 심사교수의 구두심사를 겸한다.
- 3) 프로포절 심사 결과는 교학팀에 공문으로 발송한다.

6. 연구진행 및 논문작성

프로포절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논문을 작성한다.

7. 학위청구논문 심사 제출 공고 및 신청

- 1) 각 학기 초에 논문심사계획이 공고됨.
- 2) 논문심사제출 신청서 제출시 지도교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심사비는 재무팀에 납입하며 100,000원이다.
 - ② 석사학위 논문 제출자격은, 첫째 석사과정 수료학점을 취득하고 그 성적의 평점평균이 3.0(80점)이상인자. 둘째,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금번 학기에 5차 학기 이상인 석사학위과정의 학생은 반드시 '연구등록'을 필 한 자 이어야 함)이다.

3) 지도교수가 날인한 초고 3부를 지정한 기간 동안에 대학원 교학과로 제출한다.

8. 예비 심사기간

- 1) 예비 심사는 프로포절 때의 심사위원 3인으로 하며, 심사일정과 장소는 각 학과에서 지정하여 공고한다. 이때, 학과교수 및 대학원생 참석 하에 발표하며, 심사교수의 구두심사를 겸한다.
- 2) 예비심사는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합격기준으로 하며, 심사위원 3인의 점수 총점을 평균 환산하여 80점 이상이어야 한다.

9. 본 심사기간

- 1) 예비심사 결과에 따른 지시사항을 보완 후 본심사 기간 이전에 직접 심사위원들에게 본 심사용 논문을 제출한다.
- 2) 각 학과에서 지정한 날짜에 심사위원 교수 3인에 의해서 서류심사가 이루어진다.
- 3) 본 심사 합격기준은 예비심사 규정과 동일하다.

10. 학위청구논문 인준본 제출

- 1)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존용 학위 논문을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보존용 논문 제출자료: 하드본 5부, 한글, 영문 초록(초록집 인쇄용), 학위논문 이용 동의서 제출

기타 - 논문 작성 시 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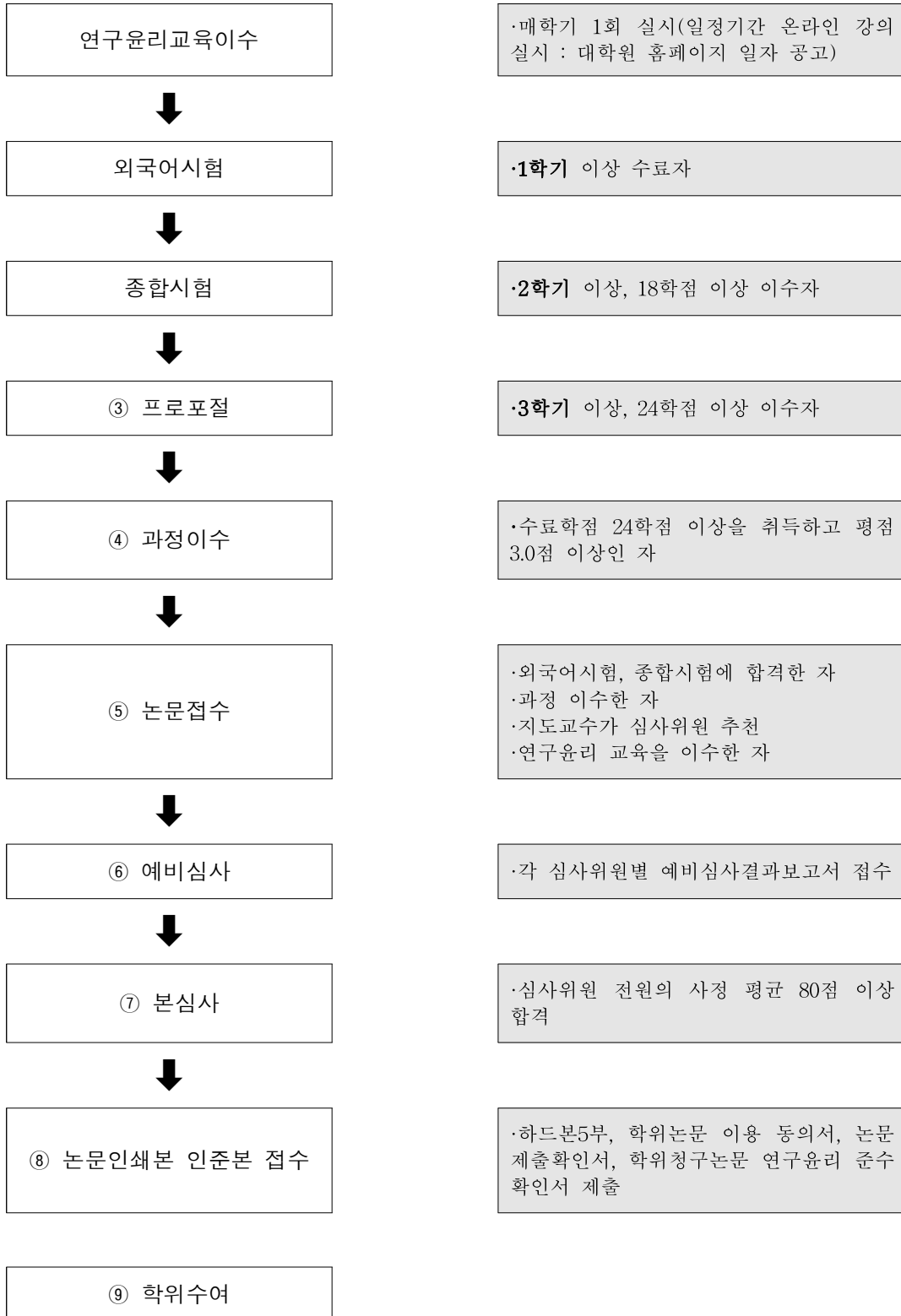
1. 각 논문관련심사(프로포절, 연구계획서, 학위논문 예비·본심사) 이후에는 반드시 수정표를 작성하여 다음 심사원고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한다. 수정표의 세부항목 및 형식에 관한 예시는 아래와 같다.

수정표

page	수정 전	수정 후
p.2	10줄, 선행연구에서는~	문장수정
p.3	7줄, 문장첨가	종합하면 청소년들은 음란물을 비롯한 미디어를 오락으로 여기고 미디어 자체를 주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미디어의 영향은 선택적으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들은 음란물을 다루면서 음란물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음란물을 판단하여 상업적인 것으로 여기면서도, 성행동에 대한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는 음란물을 생각하면서 성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줄,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삭제
p.24	2)성지식 위의 문단 따라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에게~(스트레스와 음란물의 관계만 설명, 성행동과의 관계삽입하였음.)	그러나 음란물로 해소되지 않거나 혹은 음란물과 상관없이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중압감을 주고 있는데,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소년들은 성과 사랑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최정순, 2003; 조한혜정 1992 재인용), 이 관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성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성행위는 성행위의 범주를 떠나서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잊게 하는 공부외의 다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스트레스가 성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설 하에서 스트레스가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스트레스가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p.54	1. 마지막줄, 본 연구는 청소년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고~ 2. 제언부분	1.삭제 2. 제언부분 첫째→넷째 제언부분 첫째 삽입

2. 통계분석을 위해 외부 용역업체의 도움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학위논문 작성 시 필요한 통계분석을 위해 외부 용역업체를 이용하거나, 통계분석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안 된다.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졸업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석사학위논문 진행절차도



제 3장 박사학위논문 제출 일정 및 규정

구 분	전기졸업기준	후기졸업기준	근거
1.외국어시험 신청	3월 초	9월 초	학사시행세칙
2.종합시험 신청 및 시행	3월 중순 ~4월 초	9월 중순~10월 초	학사시행세칙
3.외국어시험 시행	3월 중순	9월 중순	학사시행세칙
4.연구계획서 심사 신청	3월중순	9월중순	학사시행세칙
5.연구계획서 심사	3월말~5월말	9월말~11월말	학사시행세칙
6.연구진행 및 논문작성	6월초 ~ 10월초	12월초~4월초	학과내규
7.학위논문제출 신청기간 및 학위논문 초고제출기간	10월 중순	4월 중순	학사시행세칙
8.학위논문 예비심사기간	10월 말~ 11월 초	4월말 ~ 5월초	학사시행세칙
9.학위논문 본심사기간	11월말 ~ 12월초	5월말 ~ 6월초	학사시행세칙
10.학위청구논문인준본제출기간	12월말	7월초	학사시행세칙

1. 교과과정 이수요건

- 1) 박사과정은 60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60학점에는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24학점이 가산될 수 있다). 따라서 박사과정에서만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박사과정은 4학기제이다.
- 2) 박사과정에 있어서 필수과목 4과목(총 12학점)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중독의 이해(3학점)	고급사회조사론(3학점)
고급자료분석론 1(3학점)	고급중독연구방법(3학점)

2. 지도교수 배정

논문지도교수는 1학기 초에 연구의 주제와 학생의 희망지도교수를 참고하여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3. 논문제출자격시험

3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24학점 이상을 평균 3.0(80점)이상 취득한 자는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1) 종합시험

① 시험과목

구분	내용
전공과목 1	고급사회조사론
전공과목 2	연구의 독창성
전공과목 3	국내외 연구동향 반영도
전공과목 4	‘학술지 논문 게재’로 대체

* 전공과목 4(학술지 논문 게재)는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논문 1편을 제출하는 것으로 박사과정 입학 후 작성한 논문이어야 한다. 단독 또는 공동연구는 구분하지 않는다.

②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총점 70점 이상으로 한다.

2) 시험과목 세부 내용

① 전공과목 1 (고급사회조사론)

필답고사(서술형)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전공과목 2 (연구의 독창성)와 전공과목 3 (국내외 연구동향 반영도)

- 박사학위논문의 연구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와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고, 각각의 이론과 연구들에 대한 연구자의 비평을 포함해야 한다.
- 구술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서면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 내용, 형식, 평가기준은 <중독학과 학위논문 작성 및 제출절차에 관한 매뉴얼>(p,15)을 참고한다.
- 심사교수는 지도교수가 추천한 2인으로 하며, 심사교수 전원은 자동적으로 학위논문 심사교수로 선정된다.
- ~~지도교수가 심사교수로 2인 이하의 교수를 추천할 경우, 학과 교수회의에서 나머지 심사교수를 선정한다.~~
- 전공과목 2와 전공과목 3의 합격기준은 각각 100점 만점에 총점 70점 이상으로 한다.

③ 전공과목 4

전공과목 4 시험은 ‘학술지 논문 게재’로 대체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논문 1편을 제출하는 것으로 박사과정 입학 후 작성한 논문이어야 한다. 단독 또는 공동연구는 구분하지 않는다.

3) 외국어시험

- ① 외국어시험 중 영어과목은 공인된 영어시험의 일정 수준 이상 성적 취득자 또는 본교 외국어교육원의 지정 과목 수료증 소지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외국어시험 응시기간에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서류의 유효기간은 외국어시험 응시기간으로부터 2년 전까지로 제한한다.

면제기준

대상	시험구분	종류	면제자격(해당점수 이상자)			
			구분	PBT	CBT	IBT
석사 박사 과정	교외 (공인 시험)	TOEFL	구분	535	200	73
			석사			
			박사			
		TOEIC	석사	700		
			박사			
		TEPS	석사	600		
박사						
박사 과정	-	2004년 부터	① 기 박사학위 취득자 (취득한 박사학위증 사본 제출)			

* 본 면제기준은 200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입학자의 경우는 종전기준과 변경된 기준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② 응시자격

박사과정 2학기 이상 수료한자이며,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험과목

외국어 시험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 입학생의 외국어시험은 한국어로 할 수 있다.

④ 출제방법

외국어 시험은 전공분야 독해력을 평가하는 번역문제를 주로 다룬다.

⑤ 사정

외국어 시험의 결과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며, 4월 초와 10월 초에 대학원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4. 박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심사공고 및 신청기간

1) 논문계획서 심사공고

심사공고는 매 학기 교학과에서 공고를 한다. 접수방법은 재무과 가상계좌로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한 다음, 논문계획서 심사 신청서 및 연구윤리준수확인원을 학과 사무실에 제출한다. (외부심사위원을 제청할 경우 외부심사위원 계좌정보양식을 제출한다.)

2) 논문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박사 3차 학기 이상, 27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는 연구계획서 제출자격을 얻게 된다.
- ②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에 1편 이상의 연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독 또는 공동 연구를 구분하지 않는다. 단, 연구물은 박사과정 입학 후의 연구실적이어야 한다.
- ③ 논문계획서의 형식과 작성 기준은 학교 양식과 동일하게 한다.

5. 박사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심사

1) 논문 연구계획서 심사

- ① 논문연구계획서 심사는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정하고, 2인의 리서치 스테이트먼트 심사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논문연구계획서의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된다.
 - ③ 논문계획서 통과는 심사위원 중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 ④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연구주제의 변경 이외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또한 연구주제의 변경에 따른 심사위원의 교체는 학과교수회의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 2) 논문연구계획서의 형식과 작성 기준은 학교 양식과 함께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
- 3) 논문연구계획서는 연구실적과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research statement)을 모두 합격한 자에 한해 제출할 수 있다. 논문계획서 제출자는 논문계획서와 함께 연구실적물을 제출해야 한다.

6. 연구진행 및 논문작성

연구계획서 심사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논문을 작성한다.

7. 학위청구논문심사 제출 공고 및 신청기간

1) 논문제출 자격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2) 논문제출 접수 시기는 교학과에서 매학기 공지하며, 논문심사비를 재무팀에 납부한다. 지도교수가 날인한 학위청구논문제출신청서 및 학위청구논문초고 5부를 작성하여 교학과에 제출한다.

8.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및 본심사

1) 논문심사

- ① 논문 심사 위원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교수회의에서 선정하며,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결정한다.
-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논문계획서의 심사위원을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외부심사위원은 2인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논문 주제상 외부심사위원이 2인을 초과할 경우, 이는 학과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2) 박사학위 졸업논문의 심사는 2심제(예비심사 → 본심사)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판정

각각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과 평균평점 3.0(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9. 학위청구논문인준본 제출기간

- 1) 학위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존용 학위논문을 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보존용 논문 제출자료
하드본 5부, 한글, 영문 초록(초록집 인쇄용), 학위논문 이용 동의서 제출
- 3) (학위논문의 공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그 받은 날 부터 1년 이내에 박사학위논문을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 이 내규는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석·박사 통합과정

1. 지도교수 배정

2차 학기 이내에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단, 논문계획서 작성 시 논문 주제에 따라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논문지도교수는 5학기 초에 연구의 주제와 학생의 희망지도교수를 참고하여 교수회의에서 정한다.

2. 논문제출자격시험

석·박사 통합과정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 중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 평점 3.0(80점) 이상인 자로 한다. (세부사항은 박사과정과 동일)

3. 논문 연구계획서 심사

1) 제출시기

논문계획서는 논문심사 예정 학기의 전 학기 초에 제출한다.

2) 논문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① 5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4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편 이상의 연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물은 단독 또는 공동연구를 구분하지 않는다.(세부 사항은 박사과정과 동일)

4. 논문 연구계획서 심사

1) 논문 연구계획서 심사

- ① 논문연구계획서 심사는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정하고, 2인의 리서치 스테이트먼트 심사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논문연구계획서의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된다.
 - ③ 논문계획서 통과는 심사위원 중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 ④ 논문연구계획서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연구주제의 변경 이외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또한 연구주제의 변경에 따른 심사위원의 교체는 학과교수회의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 2) 논문연구계획서의 형식과 작성 기준은 학교 양식과 함께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
- 3) 논문연구계획서는 연구실적과 논문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research statement)을 모두 합격한 자에 한해 제출할 수 있다. 논문계획서 제출자는 논문계획서와 함께 연구실적물을 제출해야 한다.

5. 논문제출 자격

- 1)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6. 논문심사

1) 논문심사

- ① 논문 심사 위원은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교수회의에서 선정하며,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중에서 결정한다.
 - ③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논문계획서의 심사위원을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외부심사위원은 2인을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 논문 주제상 외부심사위원이 2인을 초과할 경우, 이는 학과회의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세부사항은 박사과정과 동일)
- 2) 박사학위 졸업논문의 심사는 2심제(예비심사 → 본심사)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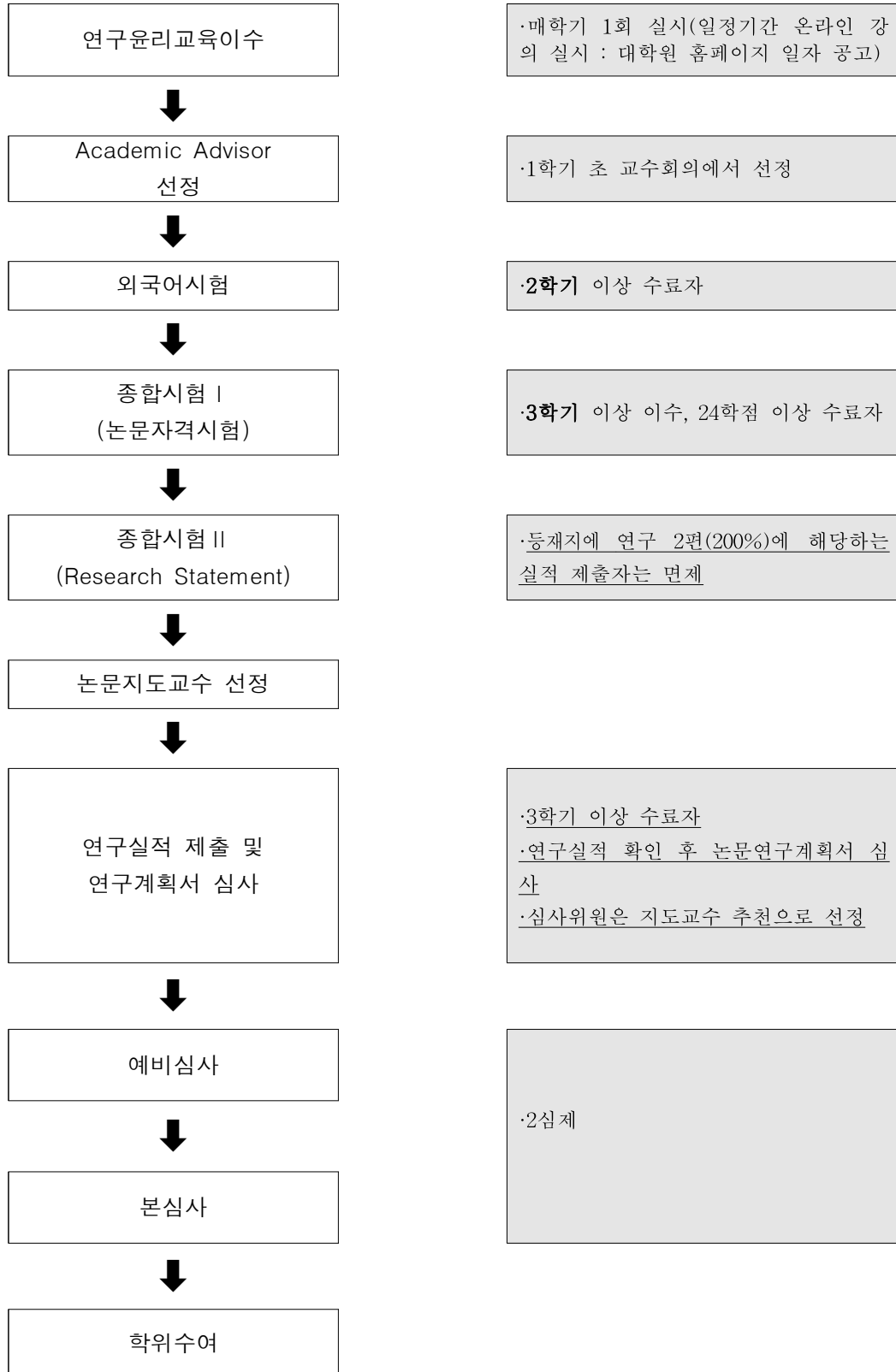
※ 이 내규는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리서치 스테이트먼트의 내용, 평가기준 및 배점

심사항목	리서치 스테이트먼트 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1. 연구필요성	<p>내용: 연구목적/ 연구문제/ 연구의 의의</p> <p>평가기준: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의 설정은 타당성이 있는가? 연구문제는 시의 적절한가? 연구는 중독 정책과 실천발전에 기여하는가?</p>	40
2. 국내외 문헌 분석	<p>내용: 해당 영역에서 10-15년간 논의된 이론적 맥락의 정리 선행연구 검토 검토한 내용에 대한 비판적 조망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의제를 구성하고, 이것이 해당 연구의 이론 영역 발전에 갖는 함의를 제시</p> <p>평가기준: 주요 저작 및 이론적 패러다임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는가? 선행연구는 충분히 검토되었는가? 이론 및 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조망은 타당하고 적절한가? 의제의 구성은 타당하고 적절한가? 연구의 함의는 타당하고 적절한가?</p>	50
3. 참고문헌	<p>내용: 참고문헌 작성법에 따른 참고문헌 제시 이론적 맥락에 따른 참고문헌의 분류</p> <p>평가기준: 참고문헌은 잘 작성되었는가? 참고문헌의 분류는 적절한가?</p>	10

박사학위논문 진행절차도



박사학위청구논문 매뉴얼에 관한 Q & A

Q. 심사원고 제출 시 더 첨부해야 할 것은 없나요?

A. 각 논문관련심사(Research Statement, 연구계획서, 학위논문 예비·본심사) 이후에는 반드시 수정표를 작성하여 다음 심사원고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수정표의 세부항목 및 형식에 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 정 표

page	수정 전	수정 후
p.2	10줄, 선행연구에서는~	문장수정
p.3	7줄, 문장첨가	종합하면 청소년들은 음란물을 비롯한 미디어를 오락으로 여기고 미디어 자체를 주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미디어의 영향은 선택적으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청소년들은 음란물을 다루면서 음란물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음란물을 판단하여 상업적인 것으로 여기면서도, 성행동에 대한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는 음란물을 생각하면서 성행동을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줄,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삭제
p.24	2) 성지식 위의 문단 따라서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와 음란물의 관계만 설명, 성행동과의 관계삽입하였음.)	그러나 음란물로 해소되지 않거나 혹은 음란물과 상관없이 스트레스는 청소년들에게 여전히 중압감을 주고 있는데, 이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청소년들은 성과 사랑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최정순, 2003; 조한혜정 1992 재인용), 이 관심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성행위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사실 성행위는 성행위의 범주를 떠나서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를 잊게 하는 공부외의 다른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스트레스가 성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우기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설 하에서 스트레스가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어떤 스트레스가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p.54	1. 마지막줄, 본 연구는 청소년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고~ 2. 제언부분	1.삭제 2. 제언부분 첫째→넷째 제언부분 첫째 삽입

Q. 통계분석을 위해 외부 용역업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절대로 안됩니다. 학위논문 작성 시 필요한 통계분석을 위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도움을 받는 것은 안 됩니다. 추후에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졸업이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Academic Advisor가 선정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1차 학기 초에 Academic Advisor가 선정되었다면, 해당 교수님을 찾아뵙고 자신의 학업 계획과 향후 논문 준비에 필요한 조언들을 듣도록 하십시오. 꼭 논문과 관련이 없더라도

대학원 수업과 생활에 있어 경험할 수 있는 고민이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또는 그 외 다양한 주제에 대해 편안하게 조언을 청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Q. Research Statement 제출 시, 과에서 지정한 작성 방법 또는 형식이 있나요?

A. 학과에서 별도로 지정한 형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구계획서 작성에 준하여 제출할 것을 권장합니다. 연구방법론과 선행연구 정리 등이 충실히 담겨져 있으면 됩니다. 더불어 15p <별표1> 'Research Statement의 내용, 평가기준 및 배점'을 참고하시어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Research Statement 준비는 어떻게 하나요?

A. Research Statement의 검토를 통해 주제에 적합한 지도교수님이 배정되고, 이후 연구계획서 작성에 대해 지도교수님에게 지도받게 됩니다.

Q. 한 학기에 논문자격시험(종합시험, 외국어시험)과 연구계획서를 동시에 패스할 수 있나요?

A. 네,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의 행정 처리를 살펴보면 논문자격시험과 연구계획서 심사 기간이 중복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먼저 종합시험과 연구계획서 심사를 모두 신청하되 종합시험이 합격한 경우에만 연구계획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구계획서 심사는 몇 명의 교수님이 하시는 겁니까?

A. 논문연구계획서 심사는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해 학과 교수회의에서 선정하고, 2인의 리서치 스테이트먼트 심사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Q. 연구계획서 심사 신청을 지도교수와의 협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교학과에 심사비 영수증을 제출할 때, 지도교수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 없이 신청할 경우, 심사학기에 심사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교내연구업적평가 A급 학술지 두 편 이상(100%+a)의 연구실적'이란 무엇이며, 이것의 항목은 무엇입니까?(2013년도까지) / 2014년도부터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를 A급 학술지로 봅니다.

A. '교내연구업적평가 A급 학술지'는 교수업적평가에 따른 학술지로 학진등재지와 학진등재 후보지중 과에서 추천한 4개이내의 학술지가 A급으로 지정됩니다. 이 목록중 특히 등재 후보지중 A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술지의 목록은 매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논문을 게재한 시점에 A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구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실적'이란 학위논문예비심사를 받기 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연구실적 점수를 의미합니다.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실적은 1/N로 인정됩니다.((예시)2인 50%, 3인 33.3%, 4인 25%로 1/N이나, 5인 이상의 경우 20%로 고정하여 인정함.) <2025-1학기부터 적용>

또한, 국제 및 국내 학술논문 등급별 인정 점수는 「성심교정 교수업적평가시행세칙」을 기준으로 시행합니다. 해당 시행세칙 내 '제 1저자 및 공동저자의 인정 점수' 또한 동일하게 적용하여 점수의 30%를 가산하여 인정합니다. <2025-1학기부터 적용>

Q. 연구실적 점수는 언제까지 충족시켜야 하나요?

A.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연구실적에 관련된 증빙서류(학술지 별쇄본)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 학과 전공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학술지의 경우, 논문연구계획서 심사결과 제출일까지 게재가 확정된 예정증명서까지 인정합니다.

Q. 학술지 목록 확인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A.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fr.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A급 목록은 학교에서 발행한 교수업적평가 규정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논문을 학칙이 규정한대로 봤을 경우, 몇 학기에 제출가능한가요?

A. 학칙에 의해 요구되는 학점을 충실히 모두 이수하고, 4학기 초에 Research Statement를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학기에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뒤, 6학기에 논문 예비·본 심사를 받으면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칙에서 규정한 가장 최소기간인 3년에 학위를 받는 것입니다.

Q. ~~‘교내연구업적평가 A급 학술지 혹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두 편(200%)<2025-1 삭제> 연구업적평가 연구실적 200점 이상<2025-1 수정>~~ 게재 시, 어떠한 것들이 면제가 되나요?

A. 논문자격시험 중 종합시험 및 Research Statement가 면제됩니다.

일반대학원 성심교정 학사시행세칙

제정 2003. 9. 1

개정 2016. 4. 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일반대학원(이하 “본 대학원” 이라 한다) 각 학위 과정의 학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입학

제2조(입학지원서류) 각 학위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기타 자격을 인정하는 서류
3.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4.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
5. 경력증명서(해당자)
6. 주민등록초본
7. 기타 필요한 서류

<박사과정>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석사학위수여(예정) 증명서
3. 석사학위과정 성적증명서
4. 출신대학의 전학년 성적증명서
5.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현역군인)
6. 경력증명서(해당자)
7. 주민등록초본
8. 기타 필요한 서류

제3조(입학전형방법) ① 입학전형방법은 서류심사, 구술심사, 필기시험 등 학과별 특성에 따라 대

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은 전공과목과 외국어시험으로 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1. 전공시험 :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을 평가하며 예능계 학과의 경우 전공영역 실기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외국어시험 : 전공별 영어 혹은 학과에 따라 기타 외국어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입학전공분야) ① 각 과정의 전공분야는 원칙적으로 각 학사 및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전공분야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야 한다.

② 각 학위과정의 전공별 특성에 따라 타 전공분야라 할지라도 지원 전공분야를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입학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입학자는 전공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충과목을 추가 이수하여야 한다.

제5조(출제방식) ① 전공과목은 각 학과 주임교수의 주관 하에 전공별로 출제방향 및 출제교수 등을 정한 후 소정용지에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교학과에 제출한다.

② 외국어과목은 일반 또는 전공분야에서 학문연구에 필요한 외국어의 독해력을 시험한다.

③ 구술시험은 학과별로 실시되며, 해당학과의 전공담당 교수가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능력, 적성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입시사정) ① 대학원부원장은 대학원운영위원회를 열어 입시사정회를 갖는다.

② 사정 결과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합격자 발표) 입시사정 후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합격통지서를 발부한다.

제8조(편입학) 편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의2(학위과정 변경) ① 석사과정으로 입학한 자가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정원의 범위내에서 박사과정에 해당되는 별도 전형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단,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3.6.13>

② 석박사 통합과정 입학자가 중도에 석사학위만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 하여 지도교수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 부원장이 허가할 수 있으며, 석사과정에 필요한 소정의 과정 (학점이수, 시험, 논문 등)을 이수하게 하여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3.1]

제9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은 매 학기초 등록기간 내에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당해학기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재입학한 학생의 퇴학 및 제적 이전 이수한 교과목 및 학점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④ 재입학은 학생의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은 퇴학 및 제적 이전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⑤ 재입학한 학생의 휴학은 퇴학 및 제적 이전의 잔여횟수에 한한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제10조(등록) ① 등록은 정규등록과 연구등록으로 구분한다.

1. 정규등록 :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을 이수할 때까지 해야 하는 등록을 말하며,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은 각각 4학기 이상, 석·박사통합과정은 8학기 이상하여야 한다. 단, 수료요건을 충족한 석·박사통합과정은 정규등록을 최대 2학기까지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5.3.1., 2016.3.1.>

2. 연구등록 :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이수를 마친 학생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해야 하는 등록을 말한다.

② 연구등록을 한 학생이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과목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학기중 군입대로 휴학할 경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할 수 있다.

제11조(휴학 및 복학) ① 휴학기간은 1회 2학기(1년)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총 휴학기간은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및 석·박통합과정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0.11>

② 군입대, 임신·출산 및 육아로 인한 휴학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1., 2016.4.21>

③ 군제대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전역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교과과정 및 수업

제12조(교과목 설정) 학과에서 제출한 교과목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되며, 설정된 교과목은 3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다.

제13조(교과목 개설) ① 학과 주임교수는 편성된 교과과정 중에서 다음 학기의 개설과목을 선정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대학원부원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각 학과에서 한 학기에 개설할 수 있는 과목 수는 석사과정은 6과목, 박사과정(석박사통합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학과에서는 9과목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을 초과하여 개설하여야 할 경우에는 대학원부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유사학과의 유사과목은 공동 개설할 수 있다.

제14조(교과목 담당교수) 대학원 교과목의 강의, 실기 및 실습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교과목 담당교수” 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학과의 추천을 통해 대학원부원장의 승인을 받은 자

제15조(담당과목의 제한) ① 교수 1인당 학기별 담당과목 수는 석사과정 1과목, 박사과정 1과목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학과 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타 학과 담당교과목 및 예능계 교수의 실기담당 교과목은 학과 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해 추가로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교과목의 강의계획서를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수강할 학생들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개강과 동시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17조(이수 학점) ① 학생은 매학기 9학점까지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단, 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학생은 3학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원부원장은 각 과정의 수업연한 기간 중 총 2회에 한하여 학기당 3학점까지 학점초과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수료학점이 30학점 이상인 석사과정(음악과의 교회음악전공, 심리학과 의 상담 및 임상심리전공)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는 매학기 3학점까지 학점초과신청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8.9.1>

③ 석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이 박사과정에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할 경우 제3학기부터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3.1>

④ 부전공은 소속학과 개설과목 중 전공 이외의 분야에서 10학점을 이수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제18조(수업일수 및 학기 인정 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한 학기중 수업일수의 1/4이상을 결석한 자는 F학점으로 처리한다.

제19조(보충과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원 입학생에 대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 주임교수는 하위 학위과정의 교과목 중 석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최대 6학점, 박사 최대 9학점의 보충과목 이수를 부과할 수 있다.

1. 하위 학위과정의 전공분야와 다른 전공분야의 상위 학위과정에 입학한 자
2.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석사학위를 소지한 박사과정 입학생
3. 기타 보충과목의 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② 보충과목의 이수는 학점은 부여하되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③ 보충과목은 각 과정 입학 후 최초 3학기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1]

제20조(수강신청 변경 및 수강과목 취소, 재수강) ① 수강신청변경은 개강 후 1주가 경과한 후에는 수강과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수강신청과목을 계속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 학기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수강과목을 취소 할 수 있다. <신설 2008.9.1>

③ 취득한 학점이 C⁺이하일 경우 동일 교과목(동일 교과목번호)을 재수강 할 수 있다.(타 학과의 교환 교과목은 제외) <신설 2008.9.1>

④ 재수강시 기존성적은 말소되고 재수강한 성적만 인정한다. <신설 2008.9.1>

제21조(학점인정) ① 석사, 석박사통합,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다른 대학교의 석박사과정에서 이수한 학점은 9학점까지 지도교수 및 전공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대학원부원장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② 협정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 및 학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학점 교환 내규에 따른다.

③ 본교 특수대학원에서 이수한 과목과 학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학점 교류 내규에 따른다.

④ 논문 지도교수와 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얻어 석사 12학점, 박사 15학점, 통합 18학점 이내에서 타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을 통해 취득한 총 학점은 석사학위 과정과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각각 12학점, 석박사통합 과정에서는 24학점까지 인정한다.

제21조의2(연구프로젝트 학점인정) 본 대학원의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 재학 중 논문을 게재한 자는 석사과정의 경우에는 3학점까지, 석·박사통합과정 및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6학점까지 학점 취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른 학과별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 내규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3.1]

제22조(학점 이중 취득) 동일한 교과목에 대하여 이중 취득한 학점은 먼저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제23조(학기중 군입대 휴학자) 수업일수 2/3를 경과한 자가 군입대할 경우 담당교수의 재량으로 소정의 평가를 한 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단, 복학하는 학기가 정규등록일 경우 등록금을 납부하여야한다.

제24조(성적 제출) 교과목 담당교수는 해당학기의 교과목 성적을 대학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성적 정정) 대학원에 제출한 교과목 성적에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학기 등록기간 이전까지 해당교수는 시험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성적정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전공변경) ① 전공의 변경은 동일학과 내에 한하며, 공통된 과목의 학점을 인정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각 과정의 2차 학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학원부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전공변경신청서
2. 학업성적표

제5장 논문제출 자격시험

제27조(논문제출 자격시험) ①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 하여야 한다.

②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③ 공인된 영어시험의 일정 수준 이상 성적 취득자는 외국어시험 중 영어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3.6.13>

④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국어시험 면제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13, 개정 2014.3.1>

제1절 외국어 시험

제28조(응시자격) ① 학위과정 정규등록자로서 석사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학기 이상, 석·박사 통합과정은 3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한다.

②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시험과목) ① 석사학위 과정의 외국어 시험은 영어로 한다. 단, 외국인 입학생의 외국어 시험은 한국어로 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 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외국어 시험은 영어와 제2외국어로 한다. 단, 제2 외국어 시험에 대하여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여부 및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1>

③ 제2외국어 시험은 독일어, 불어, 중국어, 일본어, 한문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단, 학과에 따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박사학위 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외국인 입학생에 대하여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국어 시험과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13>

제30조(출제방법) ① 외국어 시험은 전공분야와 일반분야로 구분하여 출제한다. 단, 학과에 따라 일반분야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전공분야의 수준은 독해력을 평가하는 번역문제를 주로 다루며, 일반분야는 단어, 문장의 구조 및 문법 등에 대한 능력을 시험하는 것으로 한다.

제31조(사정회) 외국어 시험의 결과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한다.

제2절 종합시험

제32조(응시자격) ① 석사학위 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자중 18학점(단, 음악과는 15학점)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 3.0이상인 자로 한다.

② 박사학위 과정에서 3학기 이상 이수한 자중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 3.0이상인 자로 한다.

③ 석박사통합과정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한 자중 3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평점 3.0이상인 자로 한다.

제33조(시험과목) ① 석사학위 종합시험의 과목은 기초과목, 전공과목, 전공외 과목 등 3과목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 및 석박사통합과정 종합시험 과목은 전공분야의 3과목 이상과 관련분야의 1과목 이상으로 한다.

③ 학과에 따라 시험과목 중 일부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과에서 대체 기준을 정하고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 <신설 2014.3.1>

제34조(시험수준) 종합시험은 학생이 학위청구 논문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전공분야의 종합적인 지식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한다.

제35조(합격 기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

제6장 학 위 논 문

제1절 논문 지도교수

제36조(논문지도 교수) ① 논문지도 교수는 석사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제2차 학기 이내, 학석사 연계과정 및 박사과정의 경우 제1차 학기부터 선정하며 학과 주임교수가 제청하

여 대학원부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3.1., 2016.4.21>

② 논문주제가 복합적이거나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학원부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 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3.9.1>

제37조(논문지도교수의 자격) 학위논문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단, 부득이한 경우 타 학과 교수 또는 외부교수에게 의뢰할 수 있으나 외부교수인 경우에는 대학원 부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논문지도교수는 정년 퇴임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수 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제38조(논문지도교수의 변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와 주임교수의 동의를 얻어 대학원부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절 논문작성 및 제출

제39조(제출자격) 각 과정의 학위논문 제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4.3.1>

1. 각 과정의 수료학점을 취득(취득 예정자 포함)하고 그 성적의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2.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자연계열 석박사 통합과정의 학생은 국제저명학술지에 연구논문을 발표한 자
4. 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의 학생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에 합격한 자
5. 대학원생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자

제40조(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 각 과정 학위논문의 체제와 규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학위청구논문체제” 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제출기한) 석사학위 논문은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4년 내에, 박사학위 논문은 7년 내에, 석박사통합과정 학위 논문은 8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1>

② <삭제 2016.3.1>

제3절 논문심사

제42조(논문심사) 논문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한다.

제43조(예비심사) ① 제출된 논문원고는 심사위원에게 예비심사를 의뢰한다.

- ② 심사위원은 논문제출자에게 논문 이외에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논문제출자는 논문과 관련된 심사위원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논문에 전반적 수정,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본심사 보류를 지시할 수 있다.
- ④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위원장은 예비심사 결과를 대학원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본심사) ① 본 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수정, 보완이 이루어졌는가를 검토하고, 해당 논문이 학위논문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판정한다.

② 학위논문의 본 심사는 소정의 기일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45조(논문심사위원) ①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석사과정 지도교수를 포함한 3명, 박사과정은 지도교수를 포함한 5명으로 하며, 각 학위논문 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 이외의 위원이 된다.

② 각 과정의 학위논문 심사위원 자격은 지도교수 자격에 준한다. 단, 박사학위의 심사위원 중 3명 이상은 박사학위 소지자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 예비심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단, 심사위원 신상의 사유로 교체가 부득이할 경우 대학원부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6조(논문의 판정) ① 석사학위논문은 심사위원 전원의 심사 결과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② 박사학위논문은 논문심사와 구술심사(공개발표)의 결과에 있어 각각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과 평균평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판정한다.

제47조(본심사 결과보고) 논문 본 심사가 끝나면 주심은 지체없이 결과를 대학원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학위논문의 공표) 합격된 박사학위논문은 학위수여 후 1년 이내에 학술지 등에 공표하고 그 별책을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학위수여

제49조(학위수여 자격) 학위수여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인 자
3.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제50조(의결 및 승인) 박사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의결로 학위수여 여부를 결정한다.

제51조(학위기) 본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학위기는 별표 I 과 같다.

제8장 연구생 및 외국인 학생

제1절 연구생

제52조(전형방법)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선발은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3조(지원서류) 소정의 지원서와 연구계획서 및 최종학력증명서로 한다.

제54조(연구생의 연구연한 및 수강) ① 연구생의 연구연한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생은 매학기 9학점 이내에서 개설교과목을 청강해야 한다.

제2절 외국인 학생

제55조(선발절차) ① 대학원학칙 제4조제1항에 의한 정원의 입학자의 전형은 대학원학칙 제8조에 근거하여 특별전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전공분야의 성격상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 사용능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과의 지원자에게는 별도의 한국어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제56조(한국어 시험) ① 한국어 시험은 필답시험과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

② 시험의 수준은 대학원의 학업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실력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각 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합격으로 한다.

④ 국내의 공인 한국어 훈련기관의 수수료중 소지자에게는 한국어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장 대학원운영위원회

제57조(대학원운영위원회) 대학원학칙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성심교정 학사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대학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학원부원장이 되며, 위원은 대학원부원장의 제청에 의거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수는 10명 내외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사안에 따라 대학원 각 학과 주임교수를 포함하는 확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9조(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대학원학칙 제43조의 기능 중 성심교정에 국한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의결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② 확대 운영위원회는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학과의 의견 수렴 및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제60조(소집과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시행세칙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 세칙(제29조제1항)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시행세칙 제정에 따라 기존 관련 제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② 이 시행세칙 제정 이전의 입학자 중 사안에 따라 입학당시의 시행세칙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입학당시 시행세칙 적용여부는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논문제출 시한 연장 적용은 2003학년도 9월 이전 입학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1조 제1항, 제11조 제2항)은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하되, 2013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8조의2, 제27조, 제29조)은 2013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되,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36조)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9조, 제21조의2, 제27조, 제33조, 제39조)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9조, 제39조의 개정 세칙은 2014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0조)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 세칙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6조, 제49조)은 2015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0조, 제41조)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6학년도 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11조, 제36조)은 2016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원 성심교정 장학금 지급 세칙

제정 2000. 3. 1

개정 2017. 1. 24

제1조(목적) 본 세칙은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 성심교정 대학원의 장학생 선정, 장학 기금 관리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세칙은 성심교정 대학원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한 업무에 적용하며,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세칙에 의한다.

제3조(업무관장) 본 장학 업무는 대학원 교학팀에서, 장학 기금 관리는 재무팀장이 담당한다. <개정 2009.9.1>

제4조(장학 위원회 구성) 장학금 지급 정책에 관한 심의기관으로 장학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은 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2. 대학원 부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5조(장학금 종류와 자격) ①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하고 그 종류와 자격은 별표 1 과 같다.

② 교내외 연구개발용역에 참여한 대학원생에게 지급되는 연구비 또는 연구보조비는 장학금으로 간주한다.

제6조(지급 금액) ① 장학금의 지급 금액은 당해년도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수혜 대상) 장학금 수혜 대상은 성심교정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 2012.11.22, 2013.3.1>

1.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2. 학생 조교
3. 가정 형편상 학비 조달이 어려운 자
4. 본 대학교 교직원의 배우자 및 직계 자녀
5. 외국인
6. 성직자 및 수도자
7. 연구 조교
8.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
9. 약학과 입학자
10. 총장이 추천한 자

11. 기타 위원회에서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의2(중복수혜) ① 교내장학금은 당해학기의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학생조교장학금 수혜로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2. 연구조교 A,B 장학금 수혜로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3. BK사업관련 교비지원장학금 수혜로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4. 외부장학금은 지급기관이 정한 바에 따르되 지급기준에 따른 요건 충족에 의하여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5. 각 종 기금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른 요건 충족에 의하여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대학원부원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

<본조 신설 2015.1.1.>

② 제1항의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성격의 장학금은 중복수혜를 할 수 없으며, 2개 이상

중복 시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6.12.7.>

제8조(신청 방법) 장학금 신청자는 매학기 공고된 기일 내에 장학금 신청서(대학원에서 교부)와 학과 주임교수 추천서 1부를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

제9조(추천) 각 학과 주임교수는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장학금 수혜 대상으로 추천한다.

제10조(추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 수혜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한다.

1. 휴학자 및 학칙 위배자
2. 성적 불량자
3. 징계 처분을 받은 자
4. 기타 원장 혹은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인정된 자

제11조(장학생의 확정) 각 학과로부터 추천된 장학금 신청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확정한다.

제12조(수혜 기간) 장학금의 수혜 기간은 당해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지급 시기) 장학금은 매 학기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장학금 지급 중지 및 환수)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한다.

1. 등록이월하지 않은 휴학자 <개정 2015.1.1.>
2. 제적 및 자퇴자
3. 근로 평가가 불량한 자
4.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될 때

제15조(보칙) ① 본 세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승인하는바에 따른다.

② 본 세칙을 개폐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제청,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이 개정 세칙(제5조)은 2004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④ 이 개정 세칙(제7조6호)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신입생 특별 장학금과 신입생 우수 장학금은 2001년 전기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성적 우수 장학금, 학업 장려 장학금, 외국인 및 교포 장학금, 교직원 자녀 장학금 및 연
구 조교 장학금은 200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하되 2010학년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별표 1)은 201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제7조, 별표 1)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하되, 2013학년도 전기 외국인
전형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세칙(제7조, 별표 1)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약학과 육성장학금에 대하
여는 2011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별표 1)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7조의2, 제14조, 별표1)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제7조)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별표1)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 (제7조의 2, 별표1)은 2016년 12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16학년도 2학기
부터 적용한다. 단, 연구조교장학금B는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세칙 (별표1)은 2017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학금의 종류

1. 교내장학금

장학금명	수혜대상	지급금액	
신입생 특별 장학금	1. 본 대학교 출신자 중 학부 졸업 시 학과 수석을 차지한 자로서 동일 계열 학과 석사과정 입학생에 한하여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본 대학교 학부 입학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우수 입학자로서 본 대학교 대학원 진학시 2년간 등록금 전액 지급 특전 수혜 대상 입학자 3. 1호 또는 2호의 해당자는 석사과정 재학 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5만점에 4.00이상이어야 당해 학기 장학금 수혜가 가능함 ※ 본 대학교 출신자 중 학부 졸업 시 학과 수석을 차지한 자는 교무처 학부 수석 졸업자 선발 기준에 따름	2년간(4학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신입생 우수 장학금	1. 석사과정 입학생 중 학부와 동일 전공자(복수전공자포함)로서 백분위 점수 95% 이상인 자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단, 본교출신자 중 동일 계열 출신 입학자는 위의 수혜자격을 인정함) 2. 석사과정 입학생 중 학부와 동일 전공자로서 학칙에 정한 조기 졸업자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1호 또는 2호의 해당자는 석사과정 재학 시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5만점에 4.00이상이어야 당해 학기 장학금 수혜가 가능함	1년간(2학기)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복지 장학금	1.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원 재학생 중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해당학기에 6학점 이상을 과락 없이 취득한 자 중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4.50 만점에 3.00이상인 자 3. 복지장학금 수혜학생의 학과별 배정인원은 해당학기 석·박사과정 재학생 총수를 기준으로 재학생 총수의 15%범위내에서 배정하되, 학과별 배정인원 기준은 해당년도 장학금 배정 예산의 규모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당해학기 수업료의 25% (수업연한에 한해 적용)	
외국인 장학금	공통 1. 본 대학원 외국인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및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재학시 성적 평점평균이 4.50 만점에 3.50 이상이어야 함		
	A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 또는 ·TOEFL(PBT580, CBT237, iBT92), IELTS 6.5 이상 취득한 경우	· 입학금 및 수업료의 75% 이내 (수업연한에 한해 적용)
	B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또는 · TOEFL(PBT560, CBT220, iBT83), IELTS 6.0 이상 취득한 경우	· 입학금 및 수업료의 60% 이내 (수업연한에 한해 적용)
	C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이내 (수업연한에 한해 적용)
D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입학자로서 입학 후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경우	수업료의 50%이내 (성적취득 다음 학기 부터 수업연한에 한해 적용)	
교직원 배우자 및 자녀장학금	본 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의 배우자 및 자녀로서 본 대학원에 재학중인 경우에 한함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 (수업연한에 한해 적용)	
연구조교 장학금	A	1. Full-time 박사과정 재학생으로 소속 학과의 석사과정 재학생수가 20명이상 4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 40명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기준으로 학과장이 추천한 자 2. 연구조교의 업무는 학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결정하되, 석사과정 학생들의 학업지도와 논문지도 보조 및 교수 연구 활동 지원 등을 수행함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B	1. 본 대학원 재학생으로 매학기 선발하되 지도교수 1인당 2명 이내로 하며, 산학협력단에 등록된 지도교수의 외부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가 해당학기 수업료의 50% 이상인 자 (단, 인문사회계의 경우 지급 인건비가 해당학기 수업료의 25% 이상인 자) 2. 해당 학과장(전공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지도교수의 연구보조업무를 수행함	당해학기 수업료의 50% 이내
학생조교 장학금	1. 본 대학원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며, 학부(과)(전공) 및 기타 이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교육 및 연구 보조업무를 수행하며 주3일 또는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2. 학생조교는 소속부서장 및 해당 학부(과)(전공)장의 추천을 받아 원장의 제청으로 교학부총장이 임명한다.	당해학기 수업료의 일정금액
대외협력 장학금	1. 언론기관, 국공학술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임원 2. 공무원, 정부출연기관, 정부산하 기관 직원 등 공직자 신분인 자 가운데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본교와 MOU를 체결한 기관 중 대학원부원장이 지정한 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4. 위의 1-3호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 3.50이상인 자 5. 최종 선발 및 장학금액은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결정	당해학기 수업료의 50% 이내 (수업연한에 한해 적용)
약학과 육성장학금	1. 본 대학원 약학과 재학생 2. 재학 시 성적 평점평균이 4.50만점에 3.50 이상이어야 함.	당해학기 수업료의 15% (수업연한에 한하여 적용)
성직자 및 수도자 장학금	가톨릭 성직자 및 수도자	당해학기 수업료의 50%(수업연한에 한해 적용)
외국인 특별 장학금	1.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자로 총장이 승인한 자 2. 재학시 성적 평점평균이 4.50만점에 3.50이상을 원칙으로 함	입학금 및 수업료의 100% (수업연한에 한해 적용)
총장 장학금	총장이 추천한 자	일정액

※ 장학금액은 각 장학금별 상한선이며,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 교외장학금

장학금 종류	수혜 자격	지급 기관
성심교정동문회 장학금	본교 출신 성적우수 학생	성심교정 동문회
성심장학회 장학금	본교 출신 성적우수 학생	성심장학회
하이서울(인문학·과학) 장학금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전일제 재학생	서울장학재단
국가연구(인문사회계) 장학금	인문·사회분야 전일제 재학생	한국장학재단
산학협동재단 장학금	본교 추천 학부 또는 대학원 재학생	산학협동재단
한국과학재단이공계대학원생연구 장학금	자연계열 학생	한국과학재단
한국여학사협회 장학금	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여학생	한국여학사협회
사회복지학전공지정발전기금 장학금	사회복지학과 성적우수 학생	한강성당 원종현신부

대학원과 특수대학원간의 학점교류 내규

-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대학교 학사시행세칙(성심)에 관한 세부사항으로서 가톨릭대학교 내의 대학원과 특수대학원간의 학점교류에 따른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학점이수) ① 각 대학원 학생은 타 대학원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해당 학점을 이수 할 수 있다.
②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류학점은 매 학기당 4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재학기간 중 총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3조(이수과목 제한) ① 학점교류 과목에서 보충과목은 제외한다.
② 소속 대학원의 교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원의 교과목은 원칙적으로 이수할 수 없다.
- 제 4조(수강신청) 학점교류제를 통하여 학점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 (별지 제1호)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5조(학점 인정) 학점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수한 대학원에서 정한 학점으로 인정한다.
- 제 6조(학점 취소) 학점교류 과목에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등록 취소 또는 교과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의 취소 혹은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조(학칙 준수)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8조(준용) 본 내규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학무 사항은 각 대학원의 학칙에 준한다.

부 칙

- 제 1조(시행) ① 이 내규는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내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2조(적용) 이 내규는 대학원과 성심교정 소속 특수대학원 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성공회대와의 대학원 학점 교환 내규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학점 교환제에 따른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① 각 대학교 대학원간 학점교환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가톨릭대학교

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나. 특수대학원 : 사회복지대학원

2. 성공회대학교

가. 일반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나. 특수대학원 : 시민사회복지대학원, NGO 대학원

②적용범위는 양교의 협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제 3조(학점이수) ① 각 대학원 학생은 양 대학원간에 합의된 교과목을 타 대학원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매 학기당 교환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총 12학점(특수대학원 학생은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조(이수과목 제한) ① 교환과목은 대학원 수준의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전임교수의 담당과목으로 한다. 단, 양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간강사의 담당과목도 교환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② 소속 대학원의 개설 교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원 교과목은 택할 수 없다.

제 5조(수강신청) 학점 교환제를 통하여 학점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한다.

제 6조(학점취소) 교환과목에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등록취소 또는 교과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의 취소 혹은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조(학칙준수)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8조(도서관 이용) 교환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제 9조(준용) 기타 사항은 각 대학원의 학칙에 준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서강대학교와의 대학원 학점교환 내규

-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대학교와 서강대학교의 대학원 학점 교환제에 따른 학점 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학점이수) ① 각 대학원 학생(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포함)은 양 대학원간에 합의된 학과목을 타 대학원에서 이수하여 학점을 이수할 수 있다.
② 매 학기당 교환학점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고 타 대학원에서 수강할 수 있는 교환학점은 총 12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제 3조(이수과목 제한) ① 교환과목은 대학원 수준의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전임교수의 담당과목으로 한다. 단, 양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간강사의 담당과목도 교환과목으로 개설할 수 있다.
② 소속 대학원의 학과목과 중복되는 타 대학원 학과목은 택할 수 없다.
- 제 4조(수강신청) ① 학점 교환제를 통하여 학점취득을 원하는 학생은 소정의 수강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한다.
② 학점 교환에 참가하지 않은 학과의 학생도 교환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 제 5조(학점취소) 교환과목에 등록을 마친 학생으로서 등록취소 또는 학과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의 취소 혹은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6조(학칙준수) 타 대학원에서 수강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7조(도서관 이용) 교환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교의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 제 8조(준용) 본 규정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학무 사항은 각 대학원의 학칙에 준한다.

부 칙

- 제 1조(시행) ① 이 내규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내규는 200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가톨릭대학교-서강대학교 대학원 학점 교환제에 의한 도서관 이용 내규

- 제 1조(목적) 본 내규는 가톨릭대학교와 서강대학교의 대학원 학점 교환제에 따른 교환학생의 도서관 자료의 상호 보완적 활용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이용자의 자격) 교환학점을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소속 대학원장이 발행한 도서관 출입 의뢰증을 소지한 자는 지정된 도서관의 이용이 허용된다.
- 제 3조(도서열람 대출증 발급) 제2조에 의한 학생에게는 출입이 지정된 도서관에서 도서열람 및 대출증을 발급한다.
- 제 4조(열람 및 대출) 도서열람 및 대출증을 발급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도서관의 규정에 준하여 도서의 열람 및 대출이 허용된다.
- 제 5조(도서의 분실, 훼손) 학생이 대출받은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당해 도서관의 변상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변상 또는 복구에 따른 제반 후속조치의 책임은 해당 학생의 소속 대학원장이 진다.
- 제 6조(휴학 또는 수강취소) 제4조에 의하여 타 대학의 도서를 대출받은 학생이 휴학 또는 교환학점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즉시 도서를 해당 도서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후속조치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제 7조(도서관 이용기간) 타 대학교의 도서관 이용은 교환학점을 수강하는 학기에 한하여 허용되며, 학기가 끝난 후에도 대출도서를 반납치 않을 때에는 학생의 소속 대학원장이 도서의 반납을 위한 후속조치의 책임을 진다.
- 제 8조(부칙) 본 내규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도서관 이용 사항은 각 대학교의 도서관 이용규정에 준한다.

부 칙

- 제 1조(시행) 이 내규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학원 학술상 내규

- 제 1조(목적) 이 내규는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이하 “대학원” 이라 한다) 학술상 규정에 의거하여 성심교정의 대학원 학술상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시상대상) 대학원 학술상 시상대상자는 다음 가항 및 나항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가. 대학원생으로서 전공 학술분야에서 훌륭한 연구업적을 내어 학문 발전에 기여한 이에게 대학원 학술상을 시상한다.
- 나. 대상논문은 전년도 1월부터 당해연도 12월까지 발행된 학술지에 게재되어야 한다.
- 제 3조(시상부문) 대학원 학술상은 인문, 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능 5개영역에서 약간 명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 제 4조(지원자격) ① 재학 중 발표한 논문(또는 발표 신청한 논문)으로서 A등급 학술지 [국제수준의 학술지 또는 전국 규모 의 전문학술지(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에 등재된 우수논문이어야 한다.(A등급 기준 : 성심교정 연구행정실의 학문분야별 학술지 등급)
- ② 본교 소속으로 발표된 논문에 한한다.
- 제 5조(지원방법) ① 학술상 지원자는 지도교수 경유,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부 원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재학중 또는 학위 수여 후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학술상 후보 논문(해당 학술지 게재된 내용) 5부와 추천서(양식) 1부를 매년 12월말까지 대학원 교학팀로 제출한다.]
- 제 6조(심사위원 구성) ① 학술상 심사를 위하여 대학원부원장은 지도교수를 제외하고 심사위원 4명을 위촉한다.
- ② 심사위원장은 대학원부원장으로 하며, 심사위원 4인은 해당전공분야 3인, 외부 및 기타 전공분야 1인으로 구성한다.(단일전공으로 구성된 계열의 논문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타 전공심사위원을 위촉하도록 할 수 있다)
- 제 7조(심사판정) ① 심사위원은 각 1-5점 사이의 점수를 줄 수 있으며, 전체 심사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하여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지원자가 해당 계열의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된다.
- ② 최종 선정자는 전체 심사위원의 “可”, “否” 로 정한다
- ③ 심사위원의 판정에 따라 해당 계열의 수상자가 선정되지 않을 수 있다. 단, 미 선정 계열이 있을 경우 심사 결과 우수한 논문이 다수인 계열에서 그 성적에 따라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 제 8조(심사 결과보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사결과를 대학원 장에게 제출한다.
- 제 9조(연구보조비의 결정과 승인) ① 연구보조비 지급액은 매 회계연도 전에 정하여 대학원운영위원회(성심)의 심의를 받는다.
- ② 매년도 학술상 지급액은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이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 제 10조(시상) ① 연 1회 시상하며, 각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학술상의 시상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실시한다.
제 11조(심사비 지급) 심사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① 본 내규는 2003학년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내규는 2006학년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학·석사 연계과정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가톨릭대학교 학칙 제36조의 3과 대학원 학칙 제25조 제3항에 따라 학부 학사 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는 5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신학대학, 의과대학, 간호대학은 제외)

제 2 조(시행범위) 학·석사 연계과정은 본교 일반대학원 학과(전공)의 희망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행한다.

제 3 조(수업연한) 학·석사 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 3.5년(7학기)
2. 석사학위과정 : 1.5년(3학기)

제 4 조(모집단위 및 인원) ① 모집단위는 학·석사 연계과정을 시행하는 일반대학원 학과 또는 전공으로 한다.

② 모집인원은 입학 예정 학년도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정원의 30%(학기별 15%) 이내로 한다.

제 5 조(지원자격 및 신청) ① 학·석사 연계과정은 매 학기 제5차 또는 제6차 학기말에 지원할 수 있다.

② 학·석사 연계과정의 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학기까지 92학점이상 또는 6학기까지 111학점이상 취득한 자(마지막 학기 계절학기 학점은 포함하지 않음)

2. 총 평점평균 3.5 이상인 자(마지막 학기 취득성적 포기 전까지의 성적 기준)

③ 대학원 지원학과(전공)는 학부 제1전공 또는 복수전공과 관련된 대학원 학과(전공)에 한하며, 복수지원은 불허한다.

④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이후 본교에서 수업이 불가능한 교환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⑤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는 학부 소속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에 제출한다.

제 6 조(제출서류) 지원자의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학업계획 포함) 1부
2. 학부 소속 전공 전임교수 추천서 1부
3. 서약서 1부
4. 학업성적표 1부

제 7 조(전형방법) 대학원 입학전형방법에 준하여 학과별 선정 기준에 의한다.

제 8 조(대학원 과목 이수) ①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부 졸업 전 6~7차 학기 동안 매 학기 3학점까지 초과하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학부 졸업 전 총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② 대학원 과목을 수강 신청 하고자 하는 자는 대학원 학과장의 수강지도를 받아 학·석사 연계과정 수강신청서를 일반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부에서 수강한 대학원 과목 이수학점은 학부 이수학점 및 평점에 포함하지 않고 대학원 입학 후 석사과정의 졸업이수 학점으로만 인정한다.

제 9 조(학부 졸업 및 대학원 입학) ① 학·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학부 졸업 시 이

수학점의 총평점평균이 3.5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학부 졸업논문 또는 졸업종합시험 등을 각 전공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할 수 있다. 단, 복수전공자의 경우 선발된 대학원 학과에 해당하는 것만 면제할 수 있다.

③ 학부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대학원 입학원서를 소정의 기한 내에 일반대학원 교학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부 졸업사정 결과 및 대학원 입학등록 여부를 서로 확인한 후에 입학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④ 학부 졸업과 동시에 반드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야 하며, 입학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부졸업을 취소한다.

⑤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대학원 첫 학기에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한다.

제 10 조(등록 및 자격상실) ①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입학하는 자는 대학원의 등록일정에 따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는 등록금 중 입학금을 면제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학·석사 연계과정 자격상실 및 중도포기자로 간주하여 일반학생들과 같이 8학기를 등록하여야 학부 졸업을 인정한다.

1. 대학원 입학 전에 학·석사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한 경우

2. 학부과정을 7학기에 모두 이수하지 못한 경우

3. 선발 시 자격요건인 평점 3.5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4. 8학기 차에 대학원 입학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④ 중도포기자라도 학부 조기졸업 규정에 의한 신청 및 이수요건(4.0 이상 등)에 충족할 경우에는 조기졸업이 가능하다.

⑤ 대학원 입학 후 첫 학기는 군입대, 병가를 제외한 일반휴학과 자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⑥ 학·석사 연계과정으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한 후 3차 학기 내에 수료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4차 학기를 정규 등록 하여야 한다.

제 11 조(학·석사 연계과정 업무 담당) ① 학·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모집요강 공고 및 홍보

2. 학·석사 연계과정 지원서 교부 및 접수

3. 선발자 결정 및 최종합격자 명단 통보

4. 대학원 등록 업무

② 학·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교무처는 학적 및 성적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③ 학·석사 연계과정과 관련하여 각 학과는 지원자 전형 및 안내 업무를 담당한다.

제 12 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부 및 대학원 학칙과 시행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중독학과 교과목 일람표

구분	과목명	과정구분	이수 구분	시간	학점	비고
중독학과	고급사회조사론	박사	전필	3	3	박사 필수
	고급자료분석론 1	박사	전필	3	3	박사 필수 교과목명 변경(2022년)
	고급자료분석론 2	박사	전선	3	3	신설(2022년)
	중독연구방법	석사	전필	3	3	석사 필수
	고급중독연구방법	박사	전필	3	3	박사 필수
	중독의 이해	공통	전필	3	3	공통 필수
	중독의 생물정신사회모델	공통	전선	3	3	
	중독의 뇌과학	공통	전선	3	3	
	중독과 정신건강	공통	전선	3	3	
	중독과 영성	공통	전선	3	3	
	중독과 자기수용	공통	전선	3	3	
	중독상담	공통	전선	3	3	
	중독가족치료 및 상담	공통	전선	3	3	
	중독문제 사례관리	공통	전선	3	3	
	중독과 형사사법체계	공통	전선	3	3	
	자료분석론	공통	전선	3	3	
	중독과 회복적사법	공통	전선	3	3	
	사회불평등과 중독	공통	전선	3	3	
	중독정책세미나	공통	전선	3	3	교과목명 변경(2023년)
	중독현장실습	공통	전선	3	3	
	행위중독세미나	공통	전선	3	3	
	물질중독세미나	공통	전선	3	3	
	중독과 사회관계망분석	공통	전선	3	3	
중독과 이상심리	공통	전선	3	3	신설 (2021년)	
중독쟁점세미나	공통	전선	3	3	신설 (2021년)	
지역사회와 중독	공통	전선	3	3	신설 (2022년)	
중독과 회복	공통	전선	3	3	신설 (2023년)	
융합연구방법	박사	전선	3	3	신설 (2023년)	
간호학과	인간관계론	공통	전선	3	3	
	가족상담 이론과 실제	공통	전선	3	3	
	스트레스 이론 및 실제	공통	전선	3	3	
	상담 이론과 실제	공통	전선	3	3	
사회복지 학과	사회복지조사론*	석사	전선	3	3	석사 필수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석사	전선	3	3	석사 필수
	고급사회조사연구	박사	전선	3	3	
	질적연구방법론	공통	전선	3	3	
	질적자료분석론	공통	전선	3	3	
심리학과	상담 및 심리치료	석사	전선	3	3	
	긍정심리개입	공통	전선	3	3	
	정신병리학	석사	전선	3	3	
	심리평가	석사	전선	3	3	
	심리연구방법론	석사	전선	3	3	

* 이들 과목이 사회복지학과에 개설되지 않을 경우 중독학과 자료분석론을 개설할 예정임. 2020년 2학기 중독학과 자료분석론을 수강한 학생들은 사회복지자료분석론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될 예정임.

* 고급자료분석론 1은 사회복지학과의 고급사회복지자료분석론 1 또는 2로 대체 가능함.